

現行消防施設設置基準의 分析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rrent Fire
Protection Standard for Buildings)

鄭 丙 宰*
李 璟 會**

ABSTRACT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s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As fire is a first product that human make, it performed many profits and services for our mankind.

Sometimes as it is profitable fire or harmful fire, it takes charge of human's life culture. Therefore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latter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high level and fire prevent facilities aren't reached to that leve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problem which appear from the analysis of place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acility. This study described as a following order.

First, We are going to look history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and change course of that with the year and facility

Second, We say the frame system and special nature of the foreign fire prevent Act.

Third, We understand the control reality of fire protection system.

Fourth, We took out the merit of foreign fire prevent law and the problem of our current domestic system

*正會員：경기도청 방위교육 담당관
**理事：연세대교수, 工博

The placing standard of proper fire protection facilities that be presented from this study are followed next

- 1) We have to reinforce sprinkler system placing standard for the fire extinguishing and check the spread of fire.
- 2) We must to be ruled the standard for keeping fire prevention system that are received reality and people's idea.
- 3) We should prepare lawful basis which can be place fire prevention center.
- 4) We have to correct the standard of use count about complex building without mainuse and we take increase the real effectiveness of this.
- 5) We ought to match the use of current fire prevention act and the use of architecture law.

I. 序論

1-1. 研究의 目的

消防의 目的은 火災를 豫防警戒 또는 鎮壓하여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保護함으로써 公共의 安寧秩序 維持와 福利增進에 寄與하는 것으로 消防法律에서 宣稱하고 있다.

이 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消防對象物 이라함은 山林·船舶(船舶安全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船舶과 港內에 繫留된 船舶에 한한다) 船渠·車輛·建築物·其他의 工作物 또는 物件으로서 이중 消防施設의 設置義務가 부여된 特殊消防 對象物이라 부른다.

消防施設에는 크게 5가지의 機能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바, 물·기타 소화약제로 불을 끄는 소화 설비와 불이난 位置를 알려주는 警報設備, 신속하게 地上으로 대피하기 위한 手段인 피난설비, 물을 저장하는 消火用水設備, 그리고 火災 진화시에 소방관이 使用하는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消防法에서는 이러한 設備를 總稱해서 消防施設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58年 制定以來 消防施設의 設置義務가 規定된 同法 施行令을 11회에 걸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高級化되어가는 建築物의 發展趨勢에 敏感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適材適所에 必要한 適應設備도 大型火災事故를 經驗하고나서 급기야 外國의 防災 法令을 檢討·改善 補完하는 惡循環을 反復하고

있다.

本研究은 消防施設의 現況을 診斷, 研究分析하여 效用價値를 높이는 同時 法制化의 資料로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消防法令의 變遷過程을 통해 消防施設의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國內外의 防災關聯文獻을 比較研究함으로써 現行 消防法令이 안고있는 問題點을 導出하는데 主眼을 두었다.

制度的으로 改善을 要하는 部分에 집중하였고, 難解한 事項에 대하여는 事例를 例證하였으며. 이를 基本으로 消防施設의 適定한 設置基準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消防施設의 一般의 事項

2-1. 消防의 意義

消防이란 단순히 어의적으로 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난것을 끄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면 소방은 「火災警戒 및 豫防」과 「火災防禦」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개념으로 소방은 「불을 끈다」는 정도로 통용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듯 광범하고 尙大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방이란 「연소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의 토대위

1)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p. 2007

에서 각종 조사를 행하여 화재경계 및 防火방법을 案出, 실제 화재에서의 火災對抗手段과 防禦戰術의 연구, 그리고 연소방지」등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선 소방법 제1조의 규정중 「이법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잘 명시되어 있다.

환언해서 소방의 眞意는 鎮火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世界思潮의으로 분때 예방경찰이 경찰제도의 주안이드이 豫防消防이 중점이어야 할 것은 明若觀火한 것이라 하겠다.²⁾

문화가 발달할 수록 火氣사용이 증가하는 한편 건축물의 밀집, 도시의 비대경향은 가일층 火災現象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예로 '79년도에 불과 1,711건이었던 화재가 10년지난 '88년에는 그 배인 2,507건이 발생³⁾한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雄辯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방의 의의와 그 중대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하겠다.

2-2. 消防의 範圍와 對象

소방의 범위에 대하여 소방법 제1조의 목적에서 직접 정면으로 明示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를 豫防, 警戒, 鎮壓하여」라는 목적실현을 위한 예방에 「부터 진압에 미친다는 것과 「國民의 生命, 身體, 財產을 그 災害로부터 保護」한다는 직접 목적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에 복지증진을 도」한다는 간접목적에 의하여 권력적, 강제적 요소 수반하는 경찰적 행정과,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화의 향상, 생산의 부흥에 기여하는 복지행정의 면에 亻하고 있는 소방행정의 一端을 窺知할 있다.

이와 같이 소방목적은 광범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국민개개인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복지와의 밀접하게 관련되고 나아가는 국가적인 이해와의 不可分의 관계가 있기

최근성, 「한국소방총람」, 삼성인쇄, 1972, p. 19
88 화재통계연보」, 내무부, 1989, p. 5

때문에 자연히 소방의 범위와 대상이 넓혀지는 것은 당연하며 구체적인 대상을 넘어서서 抽象的인 대상에까지 미치게 된다.

소방은 이러한 목적 달성과 災害라는 비상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현장에 있어서는 물론, 평소의 예방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상에 있어서의 대상은 다양하지만 소방법상의 대상물은 山林·舟車·船渠·港內에 繫留된 선박·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것을 용어해석상에 있어서 세분하면 산림이란 단순히 산악, 森林이 아니고 소방상 위험이 생길 우려있는 산림을 말하므로 산악·삼림은 물론 평야, 황무지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방상에서 단순히 주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한 의미에서의 소방대상은 선박일절의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방법상으로는 총톤수 5톤 미만의 帆船·同漁船 및 平水區域만을 航行하는 범선 또는 槽로서 운행하는 배를 지칭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타의 선박은 별도로 선박안전법에서 화재방지를 강화 규정하고 있다. 前記한 선박 이외의 선박이 소방법상 제외되게 된 것은 해상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 있고 선박안전법, 동법시행령 및 선박설비규정에 각각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船舶安全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선박의 船渠가 부두에 계류되었을 때에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車」라 함은 차량을 말하고 차량이라 함은 차마, 자동차 軌道車등을 말하며, 이러한 것이 入庫중이라도 그 대상이 된다. 여사한 소방대상중에서도 가장 광범하고 다양한 것은 건축물과 기타의 공작물일 것이다.⁴⁾

2-3. 消防施設의 歷史와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958년에 소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4) 최근성, 「한국소방총람」, 삼성인쇄, 1972, p. 20

○피난기구

연도별 장소별	'58. 7. 1	'67. 1. 15	'73.12.29	'81.11. 6	'81.6.30 ~
제 1 종장소	○ 4 층이상인 공공장소 ○ 3 층: 구난대 피난사다리, 구난사다리 각 1	○ 2 층이상인 사무: 구난대 구난사다리 30인 이상	○ 2 층이상인 사무: 구난대 구난사다리 30인 이상 (공공장소 30 인, 의료인 20인)	과 능	과 능
제 2 종장소	○ 2 층: 피난사 나리 또는 구난사다리 ○ 지하: 피난사 나리	○ 2 층이상인 사무: 구난대 구난사다리 50 인 이상 (공공, 사원 상이 3 층이상 인 사무: 구난대 50인, 기 타: 100인, 기 타: 150인)	○ 2 층이상인 사무: 구난대 구난사다리 50인 이상 (공공: 구난대 30인)	○ 구난대: 150 인 이상 (공공: 구난대 30인, 대합실 피리, 하계선 시간 50인)	과 능
제 3 종장소	미규제	과 능	과 능	과 능	과 능

2-4. 消防施設의 種類와 設置基準

소방시설은 건축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早期 感知, 警報, 通報, 초기진화, 피난등 자체소방 활동에 사용하거나 소방관서의 소방대가 소방작전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한 시설로서 현행 소방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소방시설은 消火設備, 警報設備, 避難設備, 消火用水設備,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등으로서 화재발생시 소화작업, 화재경보, 피난등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防災設備인데 모든 건축물, 공작물 또는 기타 시설물등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외에 그 설치자에게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強要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대상물의 화재위험도와 화재시에 예상되는 피해 정도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그에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소방법령에서는 화재위험도가 높고 화재시 私益은 물론 公益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외의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 설치여부를 自律에 맡기고 있다.⁷⁾

7) 고재모, 「소방시설적용해설」, 청림사, 1989, p. 4

소방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特殊場所(특수건축물)의 관계자는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24조)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제2조 내지 제144조 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소방법 29조 1항)

1) 消火設備

소화설비는 화재시 소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설비이다. 이는 火點에 불 또는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및 연소방지를 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여기에는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는데 그 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 제1항)

-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 가) 물양동이 및 소화수통
 - 나)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다)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 (2) 옥내 소화전설비
- (3) 스프링클러설비
- (4)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CO₂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 (5) 옥외소화전설비
- (6) 동력소방 Pump 설비

2) 警報設備

경보설비는 화재의 감지, 경보 및 통보기능을 가진 설비이다.

이는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를 알리는 경보설비와 화재발생 상황을 消防官署에 통보하는 速度設備등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 제2항)

- (1) 자동화재탐지설비
- (2) 전기화재경보기
- (3) 자동화재속도설비
- (4)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싸이렌, 방송설비)

3) 避難設備

피난설비는 發火建築物(2층 이상)에 收容되어 있는 인원이 안전장소로 대피하는데 사용되는 설비이다. 이는 화재시 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등으

로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직접사용하는 기구와 피난에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설비가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제3항)

- (1) 피난기구(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등)
- (2) 유도등 및 유도표지
- (3) 비상조명등
- (4) 방열복, 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4) 消火用水設備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발생시 自衛消防隊 또는 소방관서의 소방대가 火災鎮壓用水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 제1항).

- (1) 소화수조, 저수지, 기타소화용수설비
- (2) 상수도 소화용수시설

5)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 또는 소방관서의 소방대가 소화작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화작업활동에 보조 기능을 갖는 제반 설비이다. 이는 발화건축물내의 연기배출, 발화건축물내의 조명 및 비상전원의 사용, 발화건축물내와 옥외간의 通信疏通補助, 高層 및 地層에 放水機能의 일부를 담당하는 설비 등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제5항)

- (1) 배연설비
- (2) 연결송수관설비
- (3) 연결살수설비

2-5. 消防施設의 設置實態와 維持管理

'89.12.31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特殊消防對象物(소방법규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은 총 220,765개소(285,119개동)로 집계분석되고 있다.

지난 8년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年평균 10,306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비 소방대상물은 年평균 3,091개소가 감소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시설은 이동식 소방기구인 소화기로부터

표3. 소방대상물의 완·미비 현황⁸⁾

연도	구분	소 대상	완 비	미 비	미 비 유
1981		129,664	107,714	21,951	16.9
1982		130,073	125,378	4,695	3.6
1983		135,891	133,057	2,834	2.1
1984		151,869	149,563	2,306	1.5
1985		163,992	162,892	1,100	0.7
1986		177,899	177,089	810	0.5
1987		189,770	185,567	4,203	2.2
1988		201,806	198,792	3,014	1.4

고정식 소화설비까지 총 504,336개의 설비가 220,765개소의 특수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소화기는 220,765개소의 전대상에서 모두 설치되어 있다.⁹⁾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年1회이상 이들 대상에 대한 定期消防檢査를 실시하는 한편, 異狀氣象 및 火災特別警戒時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지적을 받은 대상처는 관할소방관서로부터 최고 30일간(防火施設은 60일)의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 받는데¹⁰⁾ 기간내에 不備施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¹¹⁾

표4. 年도별 소방시설 설치위한 현황

년	'82	'83	'84	'85	'86	'87	'88
2,467건	120	580	691	306	360	212	198

Ⅲ. 外國의 消防施設基準

3-1. 概要

世界 주요 國家 都市의 現制度는 나라, 都市에 따라 그 歷史, 文化, 習慣, 風土 등에 따라 千差萬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세계 각국의 防火關係法令도 法體系, 法源의 狀

8) 「한국 소방행정사」, 내무부, 1989, p. 208
 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내무부, 1989, p. 105
 10)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내무부, 1988, p. 9
 1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한국법령편찬회, 7~2권, p. 1024~7

況, 規定내지는 規制의 범위 強弱等의 면에서 불대 큰 差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세계각국 또는 都市의 防火制度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法學上의 分類로서는 유럽 大陸諸國의 소위 「大陸法系」와 英國이나 美國의 소위 「英美法系」의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¹²⁾ 이 두 法系를 比較하여 보면 大陸法系는 成文法主義를 취하는데 反하여 英美法系에서는 判例法主義를 取하는 特徵을 보게 된다.

大陸法系를 取하는 국가로서 프랑스法系를 取하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폴투갈, 中南美諸國과 獨逸法系를 取하는 獨逸, 스위스, 오스트리아, 日本,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나라에서의 법은 모두 議會에서 制定된 成文法 즉 憲法, 法律, 條例의 型式을 취하고 이러한 成文法에 根據命令, 規則의 形式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에 反하여 英美法系를 취하는 나라 例를 들면 英國, 美國,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우질랜드 등의 나라는 傳統的으로 判例法이 重視되어 있기 때문에 具體的인 事案에 關係되는 判例가 곧 法이다.

여러가지 社會相에 關係되는 判例가 쌓여 나라 또는 地方社會를 다스리는 法體系를 이룬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英美法系를 취하는 나라도 現在에도 議會가 制定하는 成文法이 있고 高度로 발달하는 複雜한 現代국가인 기구, 지방자치제의 조직이나 제도에 關係한 법이나 實體法은 오히려 判例法이라고 한다는 의회가 制定하는 成文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防火制度, 組織, 權限, 國民 또는 住民의 義務等에 대해서는 大陸法系나 英美法系를 莫論하고 成文法으로 規定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世界 여러나라의 行政法을 볼때 주의할점은 聯邦國家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州나 國內法上으로는 하나의 國家의 性格을 가지고 廣範圍한 통치권을 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全國을 統一的, 一的으로 보는것이 對인 것이다.

예를들면 美國은 각주가 각각 하나의 國家의

性格을 가지고 있어 주에 따라 行政法, 民法, 刑事法과 여러분야에서 서로 다른 制度法制를 볼 수 있다. 또한 地方自治가 철저한 美國은 州의 規制事項을 될수있는한 적게하여 具體的인 법제는 各都市에서 大幅 위임하고 있기때문에 같은 州에서도 都市에 따라 法制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防火制度나 實體에 있어서도 都市에 따라 그 內容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防火關係法이 전국통일로 규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根本的으로 다른점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양상은 美國뿐만 아니고 聯邦國家인 英國, 西獨等에서도 같다. 다만 中央集權的인 地方分權的인가에 따라 이들 각국간에 法制機構나 實體가 다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豫防消防行政은 行政官廳別로 法令이 體系化되는데 反하여, 英, 美에서는 規制對象別로 法令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消防法에 防火에 關係한 사항이 있고 建築法에는 一部分 있다.

특히 英國은 극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교, 공장등 防火對象物의 用途에 따라 法令이 있어 이들 各法令을 모두 合쳐야 전체를 把握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는 行政部處로 法令이 체계적으로 整備되어 있으나 英, 美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英, 美에서는 建築行政이 예컨대 工場에 대한 行政을 執行할때에는 간단히 工場法令을 보기만하면 되기때문에 便利한 面도 있다.

3-2. 美國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英國은 聯邦政府가 防火制度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적다.

聯邦政府가 行하는 防火는 聯邦政府에 屬하는 施設에 대한 防火에 한하고 있다.¹³⁾

1) 法律(Act and Law)

美國은 연방국가이고 연방은 연방(합중국)헌법에 열거된 權限만을 州로부터 移讓받고 있는 國家이

남승림, 행정법(全), 화학사, 1982, p. 21

13) 방화재료 및 방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연구, 건설부국립건설연구소, 1981, p. 14

다. 그러므로 연방과 각주가 각각의 行政府(大統領, 州知事) 立法部(連邦議會, 州議會) 및 司法部(連邦裁判所, 州裁判所)를 가지고 있어 形式上으로는 聯邦과 各州와는 各各 別個의 法域을 가지고 있어 연방법과 各州法이 並存하는 法的 二元性을 가지고 있다.

美國은 英國과 같이 전통적으로 判例法主義를 취하고 있어 成文法은 當初, 이러한 무수히 쌓인 判例法, 慣習法을 補完하기 위하여 制定한 것으로 현재는 複雜한 社會에 對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成文法으로 規制하게 되었다. 이러한 成文法은 한번 그것이 有效하게 公示, 施行되면 항상 判例法에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判例法이 不合理的 경우나 混亂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社會現狀 또는 社會不安에 對應하는 새로운 成文法을 制定하는 方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民事法, 刑事法에는 判例法이 남아 있지만 行政法에는 모두 成文法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의 州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이며 통치권 모두를 保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州의 代表를 맡은 州에서 「知事」라고 부르는 사실이라든가 各州를 합쳐 연방국가로서의 「合衆國」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볼때 美國의 州를 우리나라의 道, 郡, 邑等과 同一視한다면 근본적으로 틀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道는 어디까지나 單一國家로서 道의 區域內에 대한 支配權을 주는 地方自治團體의 하나인데 反하여 美國의 州는 그 自體가 本來 保有의 통치권을 가지는 하나의 국가이다. 다만 美國의 州는 國內적으로는 그 州의 영역안에 대한 국가적 統治權을 가지며 이와같은 성격을 가진 많은 州가 한데뭉쳐 一定한 조건(연방헌법)으로 연방을 結成한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다른 州와의 관계에서도 다른국가와의 관계에서도 國家로서의 性格은 表面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政治, 經濟, 軍事上에도 國際적으로는 연방국가로서의 合衆國이 表面에 나타나는 것이다.

美國을 보는데 以上の 實체를 充分히 認識하는 것이 중요하다. 防火에 대한 權限으로서 聯邦政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聯邦法에 規制되고 있는

사항은 연방정부에 속하는 시설, 예를 들면 군대 및 國防에 關聯한 시설안의 強化, 一般的으로 州와 州사이 國際的인 運輸施設, 船舶, 鐵道, 航空機에 관한 防火行政, 기타 聯邦政府의 계약물품을 製造하는 施設等에 관계되는 防火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建築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 同告示와 같은 自治團體가 施行하는 防火行政을 全國統一的으로 규제하는 法律은 全無하다.

그러므로 強力한 權限을 가진 州法이라는것은 州議會가 制定한 法으로서 우리나라의 道에서 制定하는 規制와는 本質的으로 性格이 다른 것이다. 美國의 州는 그 자체가 하나의 國家性格이기 때문에 美國의 聯邦法, 州法, 自治團體條例의 規制範圍 우선순위의 關係와 우리나라의 法律, 大統領령(施行令), 條例와 對比할 수 없다.

美國의 州法, 市郡條例에서 法律이나 條例라는 용어는 우리法體系로 볼때 명확한 용어의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法律을 Law 또는 Act라고도 하고 市郡議會에서 制定하는 것도 Law라고 하는 한편, Code, Ordinance, Regulation이라고도 하여 우리가 一般的으로 알고 있는 Law(法律)라고 하는 해석에 混亂을 가져온다.

州의 法律 또는 규칙으로서 널리 活用되고 있는 것은 NFPA¹⁴基準이 있다.

2) 條例(municipal code)

美國의 地方自治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市(Municipal)이며 市議會에서 制定한 法은 前述한 바와같이 Law, Act, Code, Ordinance等 名稱에 관계없이 市條例로 된다.

防火에 관한 條例에는 建築關係, 消防(火災豫防) 관계가 있는데 建築條例에 대해서는 消防用設備, 피난설비 등은 消防局에서 執行한다.

美國에서 條例의 執行을 알아보는데 주의할것은 條例를 制定하는 市의 區域內에는 州法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條例만 適用한다는 점이다.

一般的으로 都市에서 볼 수 있는 建築條例(Building code)의 규정사항을 보면 대략 다음과

1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미국방화협회, 1896년 설립)

같으며 이 중에서 ③, ⑧, ⑫의 각 일부 ⑬, ⑰들은 소방에서 집행하고 其他는 建築局, 電氣局, 衛生局, 警察局 등이 각각 擔當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實情이다.

- ① 建築檢事官의 權限과 責務
- ② 業種別 建物 分類
- ③ 防火의 設定
- ④ 높이 및 面積의 制限
- ⑤ 建築物의 形式, 構造 및 用途에 관한 規制
- ⑥ 劇場, 부두, 차고 등에 쓰이는 建築物에 대한 특별한 規制
- ⑦ 採光 및 換氣에 관한 規制
- ⑧ 非常口의 規制
- ⑨ 建築材料, 建築物의 荷重 및 應力基準
- ⑩ 構造規制
- ⑪ 建築工事中的 保安規制
- ⑫ 建築材料 構造材의 保護, 防火壁, 區劃 階段 및 샤프트의 遮斷, 지붕材의 및 지붕 피복재 등에 대한 耐火性, 防火性 規制
- ⑬ 굴뚝 및 暖房器具
- ⑭ 에레베이터
- ⑮ 配管工事
- ⑯ 電氣施設
- ⑰ 가스配管 및 가스 器具
- ⑱ 看板 및 揭示板
- ⑲ 消防設備

一般的으로 市의 建築行政은 市의 建築局을 中心으로 움직이는데 建築計劃의 全部를 審査하지 않고, 消防局, 電氣局, 水道局, 衛生局, 警察局 등이 각각 關係되는 사항을 審査하여 이를 각분담 사항이 모두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그 建築計劃을 許可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처럼 消防에서의 建築同意權은 없다.

3) 獨自基準(Code and Standards of Other Organizations)

(1) NFPA 準則(Code of NFPA)

美國防火協會(NFPA)는 防火에 관한 여러가지 準則을 만들어 간행하고 있다. 이 準則은 어디까지나 民間企業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적인 성격

인 것이지만 美國內의 建築, 防火 기타 여러分野의 권위자를 망라 조직한 準則起草委員會가 作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아주 높게 평가되어 美國은 勿論 국제적으로도 널리 採用되고 있다. 또한 各事業的, 建築關係者들에게 업무상의 지도서로서 利用되고 있는 외에 保險契約 및 요율산정의 기초자료로서 保險關係者에게도 利用되어 널리 防火指針으로 쓰이고 있다.

NFPA의 準則制定委員會가 制定한 準則은 火災豫防의 各分野를 망라 190名以上이 되며 이는 NFPA가 發行하고 있는 National Fire Code로 總16卷으로 되어 있다.

NFPA가 작성한 準則으로 연방 각주의 法律이나 각자치단체의 條例의 準則으로 가장 널리 活用되고 있는 것은 미국전기준칙, 人命 安全準則, 引火性 및 可燃性液體準則, LPG貯藏取扱基準, 石油연소설비 設置基準, 引火性液體移動탱크규제기준, 폭발물 및 火藥製造, 輸送, 貯藏 및 사용에 관한 準則 등이 있다. 以外에 폭발안전법 準則이나 로켓트사용준칙 등이 있으며 美國防火準則과 같이 美國內 各州에서 널리 採用되고 있다.

NFPA가 정하는 多數의 準則은 美合衆國基準協會에 提出되어 美國聯邦基準으로 承認되어 있다.

前述한 美國防火準則을 制定하는 制定委員會員은 建築 防火에 관한 각분야의 권위자가 망라되어 있어 NFPA는 準則 제정에 있어 그 適用을 받는 個人이나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最大로 努力하고 있다. NFPA는 準則起草委員會가 準則 原案 改正案을 작성하면 總會에 회부하는데 그에 앞서 이를 印刷하여 關係會員, 關係業界에 배포하고 기술기관지에 發表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많은 會員이나 一般國民의 의견을 얻을 기회를 만들고 있다. 총회에서 정식으로 審議可決되면 NFPA 準則으로 刊行되는데 총회는 一般國民에게도 널리 公開되므로 이단계에서도 널리 個人的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2) 其他의 防火關係基準(Other codes and Standards) 美國保險協會(AIA), 美國建築檢査官協會(BOCA)는 각각 火災豫防準則을 정하고 있는

데 NFPA가 制定하지 않는 防火基準을 정하고 있다. 保險研究所(UL)가 檢定하고 있는 各種製品의 구조 및 性能基準은 美合衆國基準協會에 의하여 美國聯邦基準으로 採用되고 있다. 工場相互機關(Factory Mutual=FM)도 工場의 모든 施設設備의 防火基準을 制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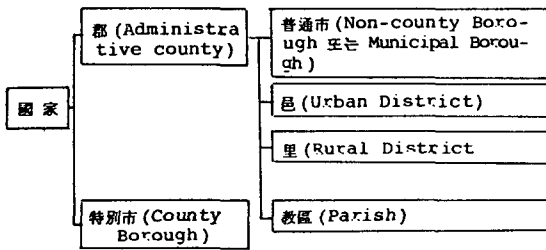
3-3. 英國

英國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4地方으로 나누어져있고 地方行政制度도 이를 各 地方에 따라 多少의 차이가 있다. 이는 이들 各地方이 각각 別個의 王國으로 由來한 歷史的인 현상으로서 聯合王國(United Kingdom)으로 통합된 현재에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에는 큰 差가 없지만 이들地方과 스코틀랜드사이에는 常用語나 制度上으로도 큰 差가 있다. 地方自治法도 잉글랜드, 웨일즈 地方에 적용하는것과의 두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地方行政區域의 廣域化, 地方行政制度의 統一化, 地方分權化로의 강한 움직임으로 이들 差異는 점점 사라질것으로 생각된다.

1) 잉글랜드 地方과 웨일즈 地方(England and Wales)

이 두 地方의 代表的 行政單位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영국지방의 행정단위 체계 1 (잉글랜드, 웨일즈)



英國에서 郡이라는 用語는 두개의 意味로 쓰인다. 그 하나는 전통적인 地名으로서 이같은 郡이 잉글랜드에 40, 웨일즈에 12, 스코틀랜드에 33, 북아일랜드에 6개소가 각각 있다. 또다른 하나의 意味는 地方行政單位로서의 郡으로 위그림에서 Administrative Country 行政郡이다.

양자중 행정군쪽이 약간 수가 많다.

행정군은 보통시와 읍과 리로 나누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구로 있다. 특별시(County Brough)는 인구 7만5천인 이상의 도시에 주어지는 행정구의 호칭으로 군과는 독립하여 군과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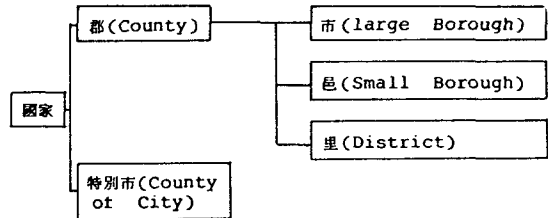
영국에서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며 행정집행기관이다. 각행정사무 구분마다 상임위원회가 행정집행의 책임을 지게된다. 시장은 있어도 행정집행의 책임은 없고 군(읍, 리)의회를 주재하는 외에는 군을 의례적으로 대표할 뿐이다.

2) 스코틀랜드 지방(Scotland)

스코틀랜드 지방은 잉글랜드나 웨일즈 지방에서 적용되는 지방자치법과는 다른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글로스코, 에딘버러, 맨디, 에버딘의 4개의 특별시외에 33개소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군에는 보통시가 24, 읍이 173, 리가 863개소가 있다.

표6. 영국의 지방의 행정단위체계2 (스코드랜드)



스코틀랜드 지방자치제도는 잉글랜드나 웨일즈와 다른 것은 관습이나 용어상의 차이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와 같이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행정기관이다. 또한 군의회, 특별시의회, 읍·리의회의 행정사무 구분도 거의 같다.

3) 防火關係法(Act and Law)

방화관계법은 주로 화재예방면에서 화재시에 피난방법등에 관하여 각각건물의 용도에 따라 개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공장에 대하여는 「工場法」(Factories Act)이 있어 공장의 설치와 관련되는 허가, 화재의 안전조

